##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1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민형배·정동영·문정복

김문수 · 양부남 · 안도걸

이개호 • 박지원 • 소병훈

김현정 · 민병덕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간 및 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 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24시간 동안 통행속도 30킬로미터 제한이 지속돼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 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통행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확보와

동시에 통행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 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해제 및 관리) 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			
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			
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어린이의 통행량과</u>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오		
	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		
	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